인천광역시 강화군

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람	기관의 장

군 보

제1412호

2026년 5월 14일(목)

- 차 례 -

입법예고

제2026-817호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 1

고시

제2026-128호 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 어린이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8
- 갑룡공원 -

제2026-129호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(유형2) 기본계획 고시 - 10

공고

제2026-795호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- 14

제2026-796호 선거인명부·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- 16

제2026-824호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취소(자진반납) 알림 - 17

입법예고

강화군 공고 제2026-817호

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, 「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5월 14일

강 화 군 수

1. 개정이유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

나.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장려하고, 강화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 (안 제2조)

나.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(안 제3조~제7조)

다.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(안 제8조)

3. 입법예고 기간

○ 2026. 5. 14.(목) ~ 2026. 6. 4.(목)

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화군수(감사법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**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**

자치법규안	찬·반 여부 및 사유
	- 구체적으로 기술 -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

- **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**

- **기타 참고사항 등**

5. 행정규제 사전심사 결과: 규제 없음

6. 공청회 개최계획: 없음

〈 의견 제출 및 문의처 〉

- 주소: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, 강화군청 감사법무담당관
- 전화: 032-930-3402
- 팩스: 032-930-3644
- 전자우편: skdbswn1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

강화군 조례 제 호

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1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강화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극행정위원회 설치)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2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

2.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,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

3.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감사법무담당관을 포함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운영한다.

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으로 한다.

제8조(표창 등) 군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, 부서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

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시

강화군 고시 제2026- 128호

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 어린이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- 갑룡공원 -

강화군 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어린이공원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(☎032-930-3198), 산림공원과(☎032-930-3459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6. 5. 12.

강 화 군 수

1. 결정 취지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 어린이공원)을 결정하는 사항임

2. 위치

○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443-1번지 일원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○ 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 어린이공원)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증감		
신설	-	갑룡공원	어린이 공원	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443-1번지 일원	18,605	18,473.6	감)131.4	2021.3.5	

○ 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 어린이공원)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결정 내용	결정 사유
A	갑룡공원	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면적 변경 -당초 면적 : A=18,605㎡ -변경 면적 : A=18,473.6㎡ (감: A=131.4㎡)	○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등. **※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면적 5% 미만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**

○ 편입토지조서

구분	필지 수		공부면적(㎡)		공원면적(㎡)		비고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갑곳리	16	1	18,605.0	18,473.6	18,605.0	18,473.6	소유자 (강화군)
소 계	16	1	18,605.0	18,473.6	18,605.0	18,473.6	

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○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/)에서 열람 가능

강화군 고시 제2026-129호

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(유형2) 기본계획 고시

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「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」에 대하여 「어촌·어항법」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5. 13.

강 화 군 수

1. **사업의 명칭 : 강화군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(유형2)**

2. **사업의 위치** :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주문항 일원

3. **사업의 목적** : 인구감소시대 어촌의 정주 가치를 높여 어촌 지역주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, 어촌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

4. **사업기간** : 2024년 ~ 2027년(총 4년)

5. **총사업비** : 10,000백만원(국비 7,000, 지방비 3,000)

6. **사업의 내용**

○ 앵커조직 운영 : 인건비,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지원, 지역자원조사,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, 링커조직 발굴 및 육성 등

○ 프로그램(S/W) : 어촌생태체험마을 기반조성, 지역맞춤형 생활서비스 환경 조성, 마을 기금 및 관계인구 플랫폼 구축

○ 어촌생활플랫폼조성 : 어촌스테이션 및 어구창고 신축

○ 어항시설정비 : 물량장 정비 및 어업환경 개선

○ 생활환경개선 : 마을 안전인프라 구축

※ 세부내역 : 붙임1 참조

7. 사업의 효과 :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환경 개선, 지역자원 기반 지역 활성화 및 관계인구 유입, 공동체 기반 경제 활성화 및 자립 역량 강화

8. 사업시행자 : 강화군수

9.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: 붙임2 참조

10. 기타사항

○ 기본계획관련 서류는 강화군청 해양수산과(☎032-930-3842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붙임 1 기본계획 세부내역

세부사업명		내역사업명	사업비(백만원) 합계 (①+②)	국비(①)	지방비(②) 광역	지방비(②) 기초	기타 (자부담, 민간 등)
총계[(1)+(2)+(3)+(4)+(5)]			**10,000.0**	**7,000.0**	**1,500.0**	**1,500.0**	-
(1) 소계			1,999.8	1,399.9	300.0	300.0	-
앵커조직운영		1. 앵커조직 운영	282.8	198.0	42.4	42.4	-
		2.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행 지원	1.8	1.3	0.3	0.3	-
		3. 지역자원조사	22.4	15.7	3.4	3.4	-
		4. 이해관계자 및 의제발굴	24.2	16.9	3.6	3.6	-
		5. 링커조직 발굴 및 육성	39.8	27.9	6.0	6.0	-
		6. 사회혁신프로그램	83.4	58.4	12.5	12.5	-
		7. 인건비	1,198.4	838.9	179.8	179.8	-
		8. 위탁수수료 등	165.3	115.7	24.8	24.8	-
		9. 부가세	181.7	127.2	27.3	27.3	-
(2) 소계			800.0	560.0	120.0	120.0	-
프로그램 (SW)		1. 어촌생태체험마을 기반조성	380.0	266.0	57.0	57.0	-
		2. 지역맞춤형 생활서비스 환경 조성	260.0	182.0	39.0	39.0	-
		3. 마을기금 및 관계인구 플랫폼구축	160.0	112.0	24.0	24.0	-
(3) 소계			4,946.7	3,462.7	742.0	742.0	-
시설조성 (HW)	어촌 생활플랫폼 조성	1. 어촌스테이션 신축	4,463.4	3,124.4	669.5	669.5	-
		2. 어구창고 신축	483.3	338.3	72.5	72.5	-
(4) 소계			922.0	645.4	138.3	138.3	-
시설조성 (HW)	어항시설 정비	1. 물양장 정비 및 어업환경 개선	922.0	645.4	138.3	138.3	-
(5) 소계			294.9	206.4	44.2	44.2	-
시설조성 (HW)	생활환경 개선	1. 마을 안전인프라 구축	294.9	206.4	44.2	44.2	-
(6) 소계			1,036.6	725.6	155.5	155.5	-
계획수립 (HW+SW)	계획 수립비	1.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	220.0	154.0	33.0	33.0	-
		2. 설계용역(기본 및 실시), 감리비 등	624.1	436.9	93.6	93.6	-
		3. 행정 및 부대비용	192.5	134.8	28.9	28.9	-

붙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

□ 어촌스테이션 및 어구창고 조성

번호	토지소재지	지 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	비 고
						주소	성명	
1	서도면 주문도리	886-20	잡	4,986.0	4,986.0	인천 남동구 정각로 29	인천광역시 (시유지)	[HW시설 조성 연면적] - 어촌스테이션 492㎡ - 어구창고162㎡
합 계		필지수 : 1			4,986	(어항구역 육역)		

공고

강화군 공고 제2026- 795호

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

「공직선거법」 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1일

강 화 군 수

1. 선거인명부 열람

가. 열람기간

2026년 5월 17일(일)부터
2026년 5월 19일(화)까지 ┐ 3일간(공휴일에도 열람가능)

나. 열람시간 :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(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없음)

다. 열람장소

장 소 명	소 재 지	비 고
강화읍사무소	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40번길 10	
선원면사무소	강화군 선원면 대문고개로 22	
불은면사무소	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62-3	
길상면사무소	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21	
화도면사무소	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03-14	
양도면사무소	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708-2	
내가면사무소	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49	
하점면사무소	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20	
양사면사무소	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1391	
송해면사무소	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29	
교동면사무소	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85-13	
삼산면사무소	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75	
서도면사무소	강화군 서도면 주문도1길 16	
서도면볼음출장소	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길 224	

라.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www.ganghwa.go.kr

마. 인터넷 열람방법

① 강화군 홈페이지 접속 후 「선거인명부 열람 팝업창」 선택

② 조 회 : 본인의 성명, 생년월일 입력(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입력)

※ 중복자 발생시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 추가 입력

③ 결과확인 : 「해당선거구 안내」, 「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」 등 안내

④ 이의신청 : 등재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「이의신청」란에 다음 내용을 기재

- 성명, 생년월일, 비밀번호, 연락처(전화번호/email) 등 입력 후 이의신청 내용

⑤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회신 : 확인 후 유선 및 서면 회신

2.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

가. 확인기간

2026년 5월 23일(토)부터 ┐
2026년 6월 3일(수)까지 ┘ 12일간(6월3일 투표마감시간까지)

나. 확인대상 : 선거인명부 등재여부, 등재번호, 투표소의 위치 등

다. 인터넷 확인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www.ganghwa.go.kr

라. 인터넷 확인방법

① 강화군 홈페이지 접속 후 「선거인명부 열람 팝업창」 선택

② 조 회 : 본인의 성명, 생년월일 입력(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입력)

※ 중복자 발생시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 추가 입력

③ 결과확인 : 「해당선거구 안내」, 「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」 등 안내

강화군 공시 제2026 - 796호

선거인명부·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

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「공직선거법」 제46조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·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6년 5월 11일

강화군수

사본의 종류	일반사본 매당 작성비용	전산자료 복사본 비용	비 고
선거인명부	· A4용지 (1매당): 70원	○ 저장장치 비용 + A4용지 면당 30원 ○ 저장장치 비용: - USB : 6,000원(개당)	
거소투표신고인명부			

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- 824호

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취소 공고

인천광역시 강화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취소 사항을 지하수법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5. 13.

강 화 군 수

1. 대상업체

상 호 (대표자)	등록연월일	업종 및 등록번호	등록번호	주된 영업소의 소재지	비고
석기건설	2026.5.13.	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	2019-03	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대월로 395	

2. 기타사항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☎032-930-348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